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① 사 건	전남행심 제2022-037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12개월 처분 취소 (감경)청구		
청 구 인	② 이 름		
	③ 주 소		
대 리 인	④ 이 름		
	⑤ 주 소		
⑥ 피청구인			⑦ 참 가 인
⑧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⑨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2. 4. 청구인에게 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원) 및 지급정지 12개월 처분은 6개월 처분으로 이를 취소(감경)한다.		
⑩ 이 유	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⑪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46조		

위 사건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2022. 5. 30.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이 유

【제2022-037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12개월 처분 취소(감경) 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시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이며, 청구의 운전자 최○○는 청구인 소유의 화물자동차(전남○○바○○○○,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는 위·수탁차주이다.

피청구인은 ○○시 ○○구청장(○○과)으로부터 ‘2021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에 따른 의심거래 내역’을 이첩 받음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이 2021. 5. 20.(13:14), 2021. 8. 10.(15:32) 외상거래분을 결제한 사실¹⁾을 발견하고, 2021. 12. 30.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환수(○원) 및 지급정지(6개월 또는 1년)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청구의 최○○은 2022. 1. 5. 피청구인에게 “외상 거래가 부정수급임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일이며, 앞으로는 절대 외상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2. 4.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하 ‘유가보조금 규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10호 위반(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은 행위)을 이유로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및 유가보조금 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라 “유가보조금(○원) 환수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12개월(2022. 2. 21. ~ 2023. 2. 20.)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2. 2. 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1) 2회분을 외상거래 한 경유 202L 유류대금을 2021. 5. 20. 1회 결제, 1회분을 외상거래 한 경유 234L 유류대금을 2021. 8. 10. 1회 결제함

2.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2. 2. 4. 청구인에게 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원) 및 지급정지 12개월 처분은 6개월 처분으로 이를 취소(감경)한다.²⁾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1) 청구의 최○○은 ○○시 ○○동에 소재한 ‘유한회사 ○○○○’의 위·수탁차주로서, 영업을 하면서 카드 고장으로 인해 카드 재발급 기간까지 주유소에서 2회분을 외상거래한 경우 202L의 유류대금을 2021. 5. 20. 유류구매카드로 1회 결제하고, 그 후 지갑을 잃어버려 1회분을 외상거래한 경우 234L의 유류대금을 2021. 8. 10. 유류구매카드로 1회 결제하여, 유가보조금 총 ○원을 지급받았다.

2) 청구의 최○○는 정당하게 주유한 건에 대하여만 외상거래금액을 유류복지카드 발급 후 일괄 결제한 것이며, 이는 고의가 아니라 법 규정을 제대로 몰라 일어난 일로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면 절대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3) 법의 무지도 잘못이지만, 이를 3번의 위반으로 보아 1년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총 1회 위반으로 보아 6개월의 지급 정지 처분을 구하며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1) 해당 의심 거래의 위법성(규정 위반 여부)에 대하여

2) 청구인은 심판청구 취지에 “피청구인이 2021. 2. 4. 청구인에게 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1년간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6개월로 감면처분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2021년 부분은 처분일자가 2022. 2. 4.이기에 이는 옳기로 보여 2022년으로 직권 정정하며,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화물자동차법 위반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지급정지(12개월) 처분이므로 위와 같이 정리하기로 한다.

유가보조금 규정 제28조(행위금지사항) 제1항 제19호는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거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외상거래에 대해 유가보조금 수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해당 의심거래를 살펴보면 2021. 5. 11.과 2021. 5. 18.에 주유한 건에 대하여 2021. 5. 20.에 결제를, 2021. 8. 8.에 주유한 건에 대하여 2021. 8. 10.에 결제를 하였으므로 이는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은 점이 명확하여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2) “차량을 교체해서 카드 재발급한 기간 중에 발생한 2건에 대하여는 위반 사항에서 제외해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1. 5. 11.과 2021. 5. 18. 거래건에 대하여 2021. 5. 12.자로 차량을 교체(대폐차)하여 새로 유가보조카드를 신청하였고 카드발급에 7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동안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주유소에 부탁하여 일단 주유하고, 차후 카드가 발급되면 그때 한꺼번에 결제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청구서에 적었다.

그러나 2021. 5. 11. 주유건은 차량 교체 이전에 발생하였고, 2021. 5. 18. 주유건은 신규카드 발급일(2021. 5. 17.)이후 발생한 것으로 두 경우 모두 당시 결제 가능한 유가보조카드를 소지하였을 것이다.

또한, 대폐차의 경우 차주·유종 등의 변경이 없으면 유가보조카드 재발급이 의무가 아니며(을 제7호증 참조) 해당 건의 경우 2021. 5. 12. 당일 대폐차가 완료되어 기존에 소지하였던 유가보조카드를 계속해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차량 교체가 있었고 기존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 알지 못했다는 점만으로는 정상 참작 등 처분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더욱이 본인이 직접 외상 거래에 대하여 추후 유가보조카드로 결제하기로 했다고 진술한 자체가 명확하게 금지행위에 해당하기에 피청구인이 ○○시 ○○구청으로부터 이첩받은 3건의 주유 거래

는 전부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2020. 7. 1.자 유가보조금 규정 개정에 따라 2020. 7. 15.부로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에서 하달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련 검토결과 및 행정상 적용례 알림(전라남도 도로교통과-20228(2020. 7. 15.호)” 에 따르면 부정수급 2건 이상 적발 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1년을 처분하도록 되어있기에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법규정에 대한 “무지”가 처분 감경 사유인지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규정 제28조(행위금지사항)제1항 각호에서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에 대한 행위 금지 사항을 규정하고, 동 규정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제1항은 행위 금지 사항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유가보조금의 환수 등 조치를, 제2항은 제1항과는 별개로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 제35조(화물차주 준수사항)제1호에서 화물차주는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유가보조금 청구·수령을 위하여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위반행위 발생 시 관할청은 고의·과실 여부를 막론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 해당 행위가 규정에 위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더라도 변함없다고 볼 것이다.

4) 결론

화물자동차법 및 유가보조금 규정을 위반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명백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12개월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행정행위인바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 1)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
- 2) 유가보조금 규정 제28조, 제29조, 제35조

5. 판 단

가.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시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이며, 청구외 최○○는 청구인 소유의 화물자동차(전남○바○○○○)를 운행하는 위·수탁차주이다.

2) 피청구인은 ○○시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에 따른 의심거래내역을 통보받고, 2021. 12. 30.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을 요구하였다.

3) 청구외 최○○은 2022. 1. 5. 피청구인에게 “외상 거래가 부정 수급임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일로써, 앞으로는 절대 외상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22. 2. 4.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원) 및 지급정지 12개월 처분을 하였다.

□ 행정처분 개요

처분의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당 사 자	차량번호	전남○○바○○○○
	성 명	○○○, 유한회사 ○○○○
위반사항	○ 위반사항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 제10호 위반	

처분내용	○ 유가보조금 환수 : ○원 ○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 2022. 2. 21. ~ 2023. 2. 20.(12개월)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44조의2 ○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9조의15, 제9조의16 ○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 제28조, 제29조

5) 청구인은 2022. 2. 9.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감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청구인은 2022. 2.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2. 21. 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054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2. 6. 1., 2013. 3. 23., 2021. 4. 13.>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5. 6. 22., 2021. 4. 13., 2021. 7. 27.>

2.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 또는 수소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유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업자등이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21. 7. 2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77호, 2022. 1. 28., 일부개정]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 6. 16., 2021. 10. 14.>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油類)일 것
 2.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4. 주유소·충전소·자가주유시설 또는 자가충전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 또는 충전받을 것
 5. 해당 화물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단가 등이 실제 주유 또는 충전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다른 법령이나 국가 간의 조약·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지 않을 것
 8. 그 밖에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 ②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의 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유가보조금은 유류를 주유받은 화물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위·수탁차주에게 지급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10. 14.>

[본조신설 2015. 12. 30.]

[제목개정 2021. 10. 14.]

[종전 제9조의14는 제9조의17로 이동 <2015. 12. 30.>]

제9조의15(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2항”은 “법 제43조제3항”으로, “유가보조금”은 “수소 연료보조금”으로, “유류”는 “수소”로, “주유소·충전소·자가주유시설 또는 자가충전시설”은 “충전소 또는 자가충전시설”로, “주유 또는 충전”은 “충전”으로, “유류비”는 “수소 연료비용”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10. 14.]

[종전 제9조의15는 제9조의16으로 이동 <2021. 10. 14.>]

제9조의16(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위반 횟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 6. 16.>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1. 12. 1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09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 조치한다.

1. 제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가 아니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할 때

2. 제14조에 따라 유류구매카드 발급 전에 사용한 유류구매 내역을 서류신청 방법으로 청구하지 않고 사후에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때
3. 제17조에 따라 카드 신규발급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 신청 전달까지의 그 기간
4.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 카드 수령일 또는 사용 개시일부터 유류구매카드를 최초로 사용하기 전까지의 그 기간
5.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분실, 훼손, 사용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재발급 등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 신청 전달까지의 그 기간
6.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카드대금연체·금융결제계좌압류·신용불량 등으로 유류구매카드 발급 또는 사용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15일 내에 발급이 가능한 다른 종류의 유류구매카드로 교체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 신청 전달까지의 그 기간
7.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물차주 정보가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유류구매에 사용한 때
8.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물차주 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15일 내에 카드 교체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 신청 전달까지의 그 기간
9. 제19조에 따른 수급자격 변경 또는 수급자격 상실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유류구매에 사용한 때
10. 제19조제5항에 따른 지급한도량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잘못 산정된 지급한도량을 그대로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
11. 제23조에 따른 관할관청의 서류신청 접수 기한을 경과한 때
12. 제25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한 대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자가주유카드를 제외한다)를 두 장 이상 발급 받은 화물차주가 하나의 카드를 분실·훼손하여 재발급 받거나 다른 종류의 카드로 교체발급 받는 경우로서, 이미 발급받은 다른 카드를 유류구매에 최근 3개월내에 사용한 실적이 있고 그 카드의 사용에 제한이 없는 경우
13. 제32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문서 등을 보존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위조 또는 허위로 제출한 때
14. 수급자격에 변동(양도, 법인합병, 상속, 휴·폐업 또는 위·수탁차주 변경 등)이 발생한 때
15. 사업의 제한(사업정지·운행정지·등록번호판영치 등)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경우 그 기간
16.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차량을 운전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기간
17. 유가보조금 지급 관할관청(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지를 기준으로 한다)에 신청하지 않은 때
18. 기타 제6조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 일반원칙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관할관청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9.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한 주유소(충전소를 제외한다)에서 유류를 구매한 때
20.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자동차의 1회 주유량이 탱크 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한 때
2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2.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

· 가담하는 행위

4. 다른 화물차주가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6.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8.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9.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 또는 판매하거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유류 등(면세유,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유사석유, 혼합유 등을 포함한다)을 알고도 구매 또는 판매하는 행위
10.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외상거래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11.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제32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
12. 삭제
13.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탁·보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5.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이 없거나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6.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17.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승인받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 가. 구조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 나. 장치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 ② 관할관청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결과를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0조의2에 의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화물차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환수
2.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환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기 보조금에서 환수금액 차감

3.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제조치는 위반 횟수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

1. 1차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④ 관할관청은 제2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중 수급자격에는 변동이 없는 화물차주의 경우(번호판 분실에 따른 번호판 교체, 대·폐차를 제외한 단순 번호변경 등을 말한다)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관할관청은 제28조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면서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이내인 경우 1회 위반에 한하여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9호 전단에 따른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

2. 제28조제1항제11호부터 제12호에 따른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⑦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위·수탁차주인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유가보조금 환수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을 준용하며, 그 기간은 부정수급을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계 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기에 위 3건의 위반 행위를 1회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을 12개월이 아닌 6개월로 감면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나) 위 인정 사실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청구외 최○○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사후에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것은 유가보조금 규정 제28조 제1항 제10호에서 행위금지사항으로 정한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금지사항 위반시 행정상 제재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화물차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고, 이와 별개로 같은 규정 제29조 제3항 제2호에서는 2차 이상 위반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바, 청구인의 위반 사실에 따라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하여 ‘적발 횟수’가 아닌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뿐만 아니라 감차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제재가 시행되는 상황인 점과 이 사건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감경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회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